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. 28 선고 2020가단20884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1나53243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. 28 선고 2020가단208847 판결

전문

원 고 광주광역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성

담당변호사 임정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서, 오혜원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용

변론 종결 2020. 12. 24

판결 선고 2021. 1. 28

주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가, 피고와 B 사이에 2018. 12. 1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

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2. 14. 접수 제241879호로
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6023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
위 법원은 2017 . 8. 29. " 피고(리는 원고에게 46, 871, 500원 및 그 중20,000,100원에 대하여는
2016. 7. 12.부터,26,871,400원에 대하여는 2016. 10. 15.부터 각 2017 . 8. 29.까지는 연
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"는 판결을
선고하였으며,그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. 10. 18. 위 판결이
확정되었다(이하 위 판결을 '이 사건판결'이라고 한다).

나. B는 피고의 이모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의 소유자이다.
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2018. 12. 14. 접수
제241879호로 등기원인을 ' 2018. 12. 13. 설정계약'(이하 '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고 한다),
채권최고액을 72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
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다.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 별 다른 재산을
소유하고 있지 않았다.

원고는 2019 . 7. 18.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9카명52230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

22. 위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고,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1,371,774원의
예금채권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
집합건물에있는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약 80,000,000원 정도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로
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
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
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6. 4.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2018. 11. 23. 부터 같은 달 27. 까지 이모인 B에게 피고의 모친인 C이 4,000만 원, 피고가
2,000만 원, 합계 6,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
체결한 것이므로,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
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 제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
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에 따른
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송인권

별지